

HYUNDAI CORPORATION HOLDINGS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앙축하옵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3월 31일 (화) 오전 8시 3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7층 연우홀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 고 사 항 : 영업보고,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 의 사 항

제1호 의안 : 제11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참조

제2-1호 : 배당절차 개선 관련 변경

제2-2호 : 사외이사 명칭 및 의무비율 상향 관련 변경

제2-3호 : 감사위원회 선임 및 구성 관련 변경

제2-4호 :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변경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김원갑 선임의 건 #별첨참조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병기 선임의 건 #별첨참조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 전자위임장 권유 관리시스템 (※ 관리업무 한국예탁결제원 위탁)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3월 21일 9시 ~ 2026년 3월 30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 전자위임장 권유 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사항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yundaicorpholdings.com>)

내 소집공고 또는 당사의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공시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 위임장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2길 25,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회계관리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우편번호 :03143)

7. 주주총회 참석자 지침물 안내

가. 직접행사 : 주주 본인 신분증

나. 대리행사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 기재사항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주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육안 확인 후 즉시 삭제하며, 별도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 위임인(주주)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4일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주) 대표이사 권 철 호

#별첨자료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 배당절차 개선 관련 변경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비고
제9조의 3 (신주의 배당기산일)	제9조의 3 (동등배당)	조문변경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배당 기준일 관련 조항 정비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12조 (기준일)	조문변경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본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좌 동>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일 관련 표준정관 반영 (배당절차 개선)
제33조 (이익의 배당)	제33조 (이익의 배당)	
②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절차 개선 관련 일부 조문 수정

제2-2호 : 사외이사 명칭 및 의무비용 상향 관련 변경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비고
제16조 (총회의 소집, 통지 및 공고)	제16조 (총회의 소집, 통지 및 공고)	
⑧ <생 략> 1. 사외이사 그 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⑧ <현행과 동일> 1. 독립이사 그 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542조의 8)
제22조의 2 (이사의 원수)	제22조의 2 (이사의 원수)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단, 전체이사의 4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 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단, 전체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독립이사로 한다. 결원으로 인해 독립이사 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상향 (상법 542조의 8)
제26조의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26조의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② 본 회사는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 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본 회사는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 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542조의 8)
제27조 (사외이사의 자격)	제27조 (독립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 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독립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 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독립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상실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상법 542조의 8)
제2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제2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⑤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⑤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요건 상향 (상법 542조의 8)
	부칙(2026.3.31)	
<신설>	제2조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제22조의 2, 제26조의 11, 제27조, 제29조(제4항, 제7항 제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2의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법을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독립이사 관련 개정상법 시행시기 적용 부칙

제2-3호 : 감사위원회 선임 및 구성 관련 변경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비고
제2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제2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반영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감사위원 의결권 제한 강화 반영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신설>	부칙(2026.3.3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1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제7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적용 부칙 감사위원 의결권제한 시행일 반영 부칙

제2-4호 :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변경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비고
제19조 (의결)	제19조 (의결)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u>서면 또는 전자문서</u>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 반영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신설>	부칙(2026.3.31) 제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 제2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결권의 대리행사 관련 개정상법 시행일 반영 부칙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김원갑 선임의 건]

- 후보자 성명/출생년월/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정상 결격사유 유무 등

성명	출생년월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법정상 결격사유 유무
김원갑	1952.10.25.	사내이사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성명	주된 직업	주요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김원갑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현대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부회장	2005-2015	현대하이스코 부회장	없음
		2015-2016	현대하이스코 고문	
		2016-현재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현대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부회장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병기 선임의 건]

- 후보자 성명/출생년월/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정상 결격사유 유무 등

성명	출생년월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법정상 결격사유 유무
이병기	1968.05.09.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성명	주된 직업	주요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이병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09-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없음